

수원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1가합299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혁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울

담당변호사 강소형, 나스란, 상종우

3. D

변론 종결2023. 4. 19.

판결 선고2023. 6. 14.

주 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7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0. 8. 12.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974,000,000원에 대해서는 2010. 8. 12.부터 2021. 11.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E동 일대에서 대출알선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2007년경 서울 중구 F에서 사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함께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피고 B(개명 전 이름 G)는 사채사무실의 사장 직함으로, 피고 C은 사채사무실의 부장 직함으로, 피고 D은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 각각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2007. 7.경 원고의 소개로 H에게 주식회사 I(주식회사 I는 2008. 3. 31. '주식회사 J'로, 2008. 8. 14. '주식회사 K'로, 2009. 3. 31. '주식회사 L'로 각각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그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위 회사를 'T'라 한다)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07. 8. 23.로 정하여 빌려주기로 하고, 2007. 7. 10. 주식회사 I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위 2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H의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10.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I가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I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08. 2. 25. I 소유의 서울 금천구 N, O에 있는 P건물 Q 내지 R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 B의 조카인 S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2. 25. 접수 제12992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C에 대하여)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직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였고, ② 원고는 2007. 8. 13. 피고들에게 I의 주식 3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무렵 위 37만 주 중 36만 주를 1,848,006,114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총당하였으며, ③ 원고는 2007. 9. 7. 3억 원, 2007. 9. 12. 1억 원, 2007. 11. 5. 2억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였고, ④ 원고는 2008. 2. 1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2008. 4. 1. 1억 500만 원, 2008. 4. 30.경 2억 5,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⑤ I는 2008. 9. 11. 유상증자한 기명식 보통주 2,707,500주를 S 명의로 피고 B에게 배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총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D은 2010. 8. 12. I를 인수한 T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10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변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이므로, 위 10억 7,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21. 10.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1,0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참조), 원고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인 97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11. 2.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직후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3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였고, ② 원고는 2007. 8. 13. 피고들에게 I의 주식 3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무렵 위 37만 주 중 36만 주를 1,848,006,114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③ 원고는 2007. 9. 7. 3억 원, 2007. 9. 12. 1억 원, 2007. 11. 5. 2억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였고, ④ 원고는 2008. 2. 1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고, 2008. 4. 1. 1억 500만 원, 2008. 4. 30.경 2억 5,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⑤ I는 2008. 9. 11. 유상증자한 기명식 보통주 2,707,500주를 S 명의로 피고 B에게 배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전부를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0. 8. 12. I를 인수한 T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10억 7,4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이 사건 변제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돈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B, C의 주장 (가)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거나 이를 변제 받은 사람은 위 대부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U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초과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변제금은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에서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I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주체로서 원고로부터 초과변제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3억 6,000만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2일 내지 3일 후 3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다거나 위 변제금이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I 주식 37만 주 담보제공 및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8. 13. 피고들에게 I의 주식 3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I의 주식 37만 주 중 33만 주가 W 계좌에, 2만 주가 X 계좌에, 1만 주가 Y 계좌에, 1만 주가 Z 계좌에 각 입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0, 23 내지 2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① 2007. 8.부터 2007. 9.까지 I의 주식 21,970주가 AA 명의 Y 계좌에 입고되고, ② 2007. 8. 21. I의 주식 46,000주가 AB 명의 X 계좌에 입고되었으며, ③ 2007. 8.경 I의 주식 20만 주가 AC 명의 W 계좌에, 2007. 8.부터 2007. 9.까지 I의 주식 3만 주가 AD 명의 W 계좌에, 2007. 8. 17. I의 주식 10만 주가 AE 명의 W 계좌에 각 입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이를 처분하여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6억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7.부터 2007. 11. 5.까지 피고 C에게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은 2009. 6. 19. 원고에게 '위 금액을 원고에게 수령하여 사무실에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변제금이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1억 500만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4. 1. 피고 C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AF는 '원고가 사채사무실 직원인 피고 C에게 2008. 4. 1. 1억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채 사무실 이자 및 추가지급'(갑 제6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변제금이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2억 5,500만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F는 '원고가 사채사무실 직원인 피고 D에게 2008. 4. 30. 2억 5,5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사채 사무실 이자 및 추가지급'(갑 제6호증의 1)을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변제금이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I 주식 2,707,500주 변제충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I는 2008. 9.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S에게 2,707,500주를 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속한 사채사무실에서는 위 주식의 가치하락을 대비하여 I가 2009. 3. 18. 발행한 액면금 18억 원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들에게 배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그 밖의 사실 및 사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대부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들을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주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또는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이익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C, AF가 작성한 '확인증'(갑 제3호증), '사채사무실 이자 및 추가지급'(갑 제6호증의 1)에는 피고 C, D은 사채사무실의 직원으로 되어 있을 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는 2008. 2. 12. B에게 '사무실(B)의 돈으로 I에 투자한 금액은 총 22억 5,000만 원이고 현재 13억 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며, 사무실회장(U)에게 I가 발행한 액면금액 15억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B에게 I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B에게 액면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이자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문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사무실 회장)은 피고들이 아닌 제3자(U)로 되어 있다[또한 피고 B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내역에 따라 작성한 대출표(을가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2010. 8. 경까지도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에서 손해 및 이득의 발생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I를 인수한 T로부터 2010. 8. 12. V를 통하여 이 사건 변제금 10억 7,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S이 2010. 8. 12. 대리인인 피고 D를
통해 V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18억 원¹⁾을 V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변제금 10억 7,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D이 V로부터 10억 7,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변제금의
지급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들의 이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V는 이
사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배당금출급채권에 관한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056호,
2013가합2016호 사건)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S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위 배당금출급채권이 V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8303, 8310, 40796호 사건)에 이르러 V가 위 배당금 20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위 사건 원고 S, 피고 AG,
독립당사자참가인 I, V, 조정참가인 AF 사이의 분쟁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렇다면 위 조정 결과에
따라 V 내지 T에게 이 사건 변제금액에 상당한 손해액 즉, 피고 D에게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하고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갈음하여 위
배당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T 내지 원고 측에게

더 이상 손해가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살피보나 이유 없다[설령 피고 B, C이 이 사건 변제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여 원고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제금이 2010. 8. 12. 지급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 C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며, 상인인 피고 B, C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V로부터 이 사건 변제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위 2010. 8.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1. 10. 28.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2),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맹준영

판사홍연경

판사임정빈

1)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제1의 다항 기재 I가 2007. 11. 20.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이었으나(갑 제4호증), 이후 I가 2009. 3. 18. 발행한 액면금 18억 원의 약속어음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9, 10호증).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게 교부한 I의 주식 처분대금 및 I가 발행한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약정금을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또한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그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어느 하나의 청구로 다른 채권에 대한 권리실행의 의사까지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이전까지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에 비로소 발생한다.